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13조 제1항 및 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(환경부)」 에 의거
비닐류,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비닐류 |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

분 리 배 출 기 준	재활용 불가능	재활용 가능
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 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		

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**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**

스티로폼 | 흰색만 배출

분 리 배 출 기 준		재활용 불가능	재활용 가능
상자류	테이프, 운송장,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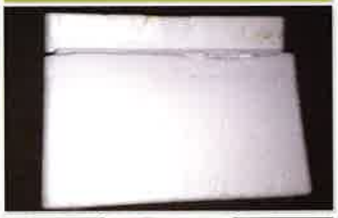
용기류	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		
음식물 포장재	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		

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, 코팅된 것 등은 **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**

✔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
분리배출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**폐기물로 처분**됩니다.

✔ 재활용 분리배출기준을 **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**이 됩니다.

중 구 청 장